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15 선고 2021가합517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발
담당변호사 박영수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태훈, 정용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와 유한회사 D(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451,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

1) 채무자회사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016. 5. 27. 상환기일을 2017. 5. 26.로 하여 1,250,000,000원을, 2016. 10. 24. 상환기일을 2017. 10. 24.로 하여 2,700,000,000원을, 2016. 12. 14. 상환기일을 2017. 12. 14.로 하여 8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E은 2020. 6. 11.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채무자회사, 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차전12286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2. 7. 채무자회사는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17%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채무자회사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21.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

1) 채무자회사는 2012. 10. 3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신탁하였다(이하 위 담보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수익자와 우선수익자)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별지2와 같이 수익자와 우선수익자를 지정한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제1순위 우선수익자 또는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은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와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공사도급계약 등을 위반한 때

5. 그 밖의 법률 규정의 개·폐 등 제도의 변경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 신탁부동산의 담보 가치 하락 등으로 우선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전부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제24조(신탁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우선수익자, 수익자(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 포함) 및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법률 규정의 개·폐 등 제도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화, 피분양자로서의 소유권이전, 그 밖의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수탁자는 수익자, 우선수익자(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 포함)와 협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2의 1과 같이 하되 신탁기간 만료 시까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완제되지 아니할 경우, 완제 시까지 신탁기간은 동일기간으로 자동연장된다.

제12조(신탁해지)

신탁계약 본문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2]

1. 신탁기간: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2. 수익자

신탁이익의 수익자: 채무자회사

신탁이익의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H

3. 채무자

채무자회사

4. 수익한도금액

제1순위: 주식회사 H(우선수익자), 9,108,000,000원

대출금(7,590,000,000원)의 120% 적용

2) 2012.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2012. 10.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채무자회사는 2017. 4.경 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G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지를 요청하였다. G와 채무자회사는 2017.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신탁귀속(해지)증서를 작성하였다. 2017.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회사 명의로 2017. 5. 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채무자회사는 2017. 5.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은 2020. 5. 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군산시 I

대 40㎡를 대금 38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군산시 I 대 40㎡에 관하여 2020. 5. 6.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J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2. 4. 13.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J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회사는 2016. 12. 31. 기준 자산 4,656,461,000원, 부채 12,118,118,000원으로 자본 -7,461,657,00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회사는 2017. 4.경 우선수익자인 H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인 G에 신탁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회사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무자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사는 피고 B과 통정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17. 5. 15.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에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 당시인 2017.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715,45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다만 처분 당시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위탁자가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부동산을 환수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 9,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시가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채무자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무자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상태가 한층 심화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은 H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대출금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재산을 신탁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2조에 의하면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우선수익자인 H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 우선수익자인 H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사유로 위탁자인 채무자회사에게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채무자회사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탁자인 채무자회사의 수익권만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회사는 2017. 4.경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우선수익자인 H의 동의를 얻어 G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신탁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7. 5. 4. 채무자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채무자회사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전부 1순위 우선수익자인 H에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는바, 위 매매로 인하여 채무자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5. 15.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492,432,500원인데, 피고 B은 채무자회사에 매매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위 매매대금을 H에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2017. 5. 15. 기준 대출금채무 잔액이 4,672,160,000원이었다. 따라서 채무자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과도히 염가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및 당시 시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는 전부 H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회사의 재산의 가액에서 비용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채무자회사의 H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위탁자인 채무자회사의 수익권의 잔존 가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다.

라) 채무자회사는 2017. 3.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L에게 매도하고, 2017. 4. 11. G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 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있다. 채무자회사의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8가단53847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채무자회사의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매계약상의 대금과 계약 당시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채무자회사가 수령한 매매대금을 H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체결시점이 근접하여 있고, 채무자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령한 매매대금을 모두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정황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민, 판사 김은지, 판사 이명은

목 록

1. 군산시 M 대 291㎡
2. 군산시 N 대 221㎡
3. 군산시 O 대 3439㎡
4. 군산시 P 대 617㎡
5. 군산시 Q 대 859㎡
6. 군산시 O, P, Q, I에 있는 R동
[도로명주소] 군산시 S 지상
목조 아연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47.06㎡
7. 군산시 O, P, Q, I에 있는 T동
[도로명주소] 군산시 S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1층
문화및집회시설 412.56㎡, 끝.

